심사보고서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72 2019. 10. 25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한대행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·도별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「충 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」에「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지침」준수 의 무규정을 명시하고자 함
 - ※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'19. 4. 12.)

나. 주요내용

○ 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제4항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곽영학)

-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 받침하고 4개 권역(충북, 충남, 대전, 세종) 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·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를 한 것임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산항목에 포함하고 산출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부담금을 산정할 것을 충북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음.(19. 4. 2)
- O 이번 일부개정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'경비부담 및 집행'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- O 공동 사업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」

의안번호	제 272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의 안 번 호 272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개정사유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·도별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「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」에「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지침」준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자 함

※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'19. 4. 12.)

2. 주요내용

○ 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제4항 신설 공동 사업비는「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」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며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2조, 제158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의안전문 : 붙임

6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제12조(경비부담)

- ① 충청권 4개 시·도는 협의회 운영과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사업비를 분담한다.
- ② 공동 사업비는 협의회장이 속한 시·도가 맡아 운영한다.
- ③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인상 및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인 충청권 시도 위원 전원이 찬성할 시 변경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

- ① 충청권 4개 시·도는 협의회 운영과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사업비를 분담한다.
- ② 공동 사업비는 협의회장이 속한 시·도가 맡아 운영한다.
 - ③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인상 및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인 충청권 시도 위원 전원이 찬성할 시 변경할 수 있다.
 - ④ 공동 사업비 집행은「지방 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회 장은 공동 사업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 하여야 한다.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

[2017.12.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4개 권역 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(이 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 청권관광산업의 진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소)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 둔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의 관광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협의회장은 당해 연도 주관 시·도의 관광업무 담당과장(이하 "담당과장"이라 한다)이 맡되 매년마다 윤번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권 4개 시·도의 담당과장과 관광협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(항공사, 여행사 등) 종사자로 구성한다.
- ④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당연직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당연 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해촉시에도 위촉과 동일하게 결정한다.
-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⑥ 위 위원 이외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단, 간사는 당해 연도 주관 시·도의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구성원 중 1인이 맡는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① 충청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
- ②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
- ③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
- ④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- ② 정기회는 연 1회 1월에서 2월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검토와 실무 작업을 거쳐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협의안건은 협의회장에게 미리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안건합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7조(회의참석) ① 위원이 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·군·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처리) 협의회의 사무는 간사가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9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·관리한다.

제10조(자료제출 요구 등)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개진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합의조정)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) ① 충청권 4개 시·도는 협의회 운영과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사업비를 분담한다.

- ② 공동 사업비는 협의회장이 속한 시·도가 맡아 운영한다.
- ③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인상 및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인 충청권 시도 위원 전원이 찬성할 시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약개정) 협의회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 개정은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 제2조(종전규정) 개정 이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위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■ 지방자치법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혐의회의 명칭
- 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- 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- 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- 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- 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■ 지방재정법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-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수 있다.